

# 규 정 입 안 서

1. 규정 명칭 :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
2. 입안 부서 : 사무처
3. 입안 구분 : 제정(    ), 개정( ○ ), 폐지(    )
4. 입안 이유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4조에 따라 대학원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를 변경하기 위함
5. 주요 골자 :
  - 가. 대학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7명 이상으로 변경하고, 당연직에 대학본부의 각 처장을 포함함(제35조제2항)
6. 참고 사항 :

2024년 4월 11일

첨 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<b>제35조(구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<u>5인 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.</p>	<p><b>제35조(구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위원회는 총장, 부총장, 각 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<u>7인 이상</u>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총장은 위원장이 된다.</p>	<p>법령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7인 이상으로 변경하고 당연직에 각 처장을 포함함</p>